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02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혁	이 *혁 1990-09-16	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(오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02
김 *은	김 *은 1996-07-02	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(오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02